



##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

- +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중소(중견)기업 핵심인력의 추가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
  - +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률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
- \*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적립비율(근로자1:기업2)과 기간(5년)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, 정부지원금은 없음

### 지원대상

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·중견기업

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(2년형·3년형) 만기 후,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 
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

### 지원조건

가입기간 3년(36개월, 기간 변경·연장 불가)

부금납입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(1:1비율, 정액적립)

가입금액 3년 1,008만원(월14만원×2×36개월) + 복리이자

### 가입혜택

+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

\* 기업 손비인정+인력개발비 세액공제(25%)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50% 감면  
(단,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예치시 적용)



중소벤처기업부



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